

외국의 간접흡연규제 정책 동향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of Smoke-free Policies:
Canada, Singapore, USA*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정책은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간접흡연규제정책의 흐름은 흡연을 제한하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흡연규제내용에서는 초기에는 실내에서의 흡연장소를 제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점차,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정책으로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외에서의 흡연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연시설과 인접한 실외에서의 흡연도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캐나다는 가장 선진적인 간접흡연규제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이다. 또한 싱가포르도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캐나다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캐나다 연방정부의 담배 규제 관련법으로는 Tobacco Act와 Non-smokers' Health Act가 있는데, 이 중 간접흡연 규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은 Non-smokers' Health Act(NSHA)로서 연방 정부가 간접흡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8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내 각 주를 이동하는 교통 수단을 비롯하여 정부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타 모든 사업장에서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일반적으로 주 법률과 지방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2003년 캐나다의 비흡연자권리협회(NSRA)는 실내완전금연실시에 대한 간접흡연 규제의 분류 체계로서 골드, 실버, 브론즈 기준을 정립하였다.¹⁾ 이러한 기준 하에 2003년에는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New Brunswick,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의 7개주가 골드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 3월 기준 Prince Edward Island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골드기준으로 간접흡연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강화되어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건물과 인접한 공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공공장소, 직장, 학교, 보건, 사회 서비스 기관, 칼리지 및 대학교, 비주택 아동보육 센터 및 시설의 출입구, 창문과 공기 흡입구에서 2.4~9m의 거리 밖에서 흡연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표 1 참조).

또한 해당주의 지자체에서는 주에서 제시한

표 1. 캐나다 주 정부의 간접흡연규제현황

주 정부명	법령명	효력일자	기준	실외흡연시 실내와의 거리규제	
				해당장소	실내와의 거리
British Columbia	Tobacco Control Act	31/03/2008	골드	공공장소, 직장, 학교의 출입구, 창문과 공기 흡입구	3m
Alberta	Smoke-free Places (Tobacco Reduction) Amendment Act	01/01/2008	골드	모든 직장 및 공공장소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5m
Saskatchewan	The Tobacco Control Act	October 2010	골드	학교를 포함 밀폐된 공공 장소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3m
Manitoba	The Non-Smokers' Health Protection Act	01/10/2004	골드	-	-
Ontario	The Smoke-free Ontario Act	31/05/2006	골드	병원, 보건 의료 및 정신 시설	9m
Quebec	The Tobacco Act	31/05/2006	골드	보건, 사회 서비스 기관, 칼리지 및 대학교, 비주택 아동보육 센터 및 시설	9m
New Brunswick	The Smoke-free Places Act	01/10/2004	골드	-	-
Nova-Scotia	The Smoke-free Places Act(amended)	01/12/2006	골드	직장 및 학교의 지정된 실외 구역, 출입구, 비상구, 공기 흡입구, 창문	4m

1) 골드 기준: 식당, 바, 당구장, 빙고게임장, 볼링장, 카지노 및 도박장 등 모든 공공장소와 직장실내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함.
 실버 기준: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바, 당구장, 빙고게임장, 카지노/슬롯에 한해서 흡연실 지정을 허용함.
 브론즈 기준: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바, 당구장, 빙고게임장, 볼링장, 카지노/슬롯에 한하여 흡연실이나 흡연구역 지정을 허락함.

〈표 1〉 계속

주 정부명	법령명	효력일자	기준	실외흡연시 실내와의 거리규제	
				해당장소	실내와의 거리
Prince Edward Island	The Smoke-free Places Act	15/09/2009	-	공공장소 및 직장의 출입구 및 공기 흡입구, 베란다로 사용되는 실외 구역 출입구	4.5m 2.4m
Newfoundland and Labrador	The Smoke-free Environment Act	01/06/2005	골드	-	-
Yukon	The Smoke-free Places Act	15/05/2008	골드	직장, 공공장소, 학교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일정거리
Northwest Territories	The Tobacco Control Act The Environment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ulations	30/09/2006 31/05/2004	골드	밀폐된 직장과 공공 장소의 출입구, 비상구, 다만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밀폐된 장소 제외	3m
Nunavut	The Tobacco Control Act The Environment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ulations	31/05/2004 31/05/2004	골드	밀폐된 직장과 공공 장소의 출입구, 비상구, 다만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밀폐된 장소 제외	3m

자료: Non-smoker's Right Association(2011.3). Compendium of smoke-free Workplace and Public Place Bylaws.

기준 보다 더 강화된 간접흡연규제를 실시하는데, 한 예로 British Columbia주에 소속된 25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가 특정 공공장소의 완전실내금연은 물론 실내와 최소 3m 최대 25m 이상의 거리밖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내로의 흡연유입을 차단하는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표 2 참조).

3. 싱가포르의 간접흡연 규제 동향

싱가포르는 1970년부터 간접흡연예방을 위

한 공공구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하여 왔다. 1970년 10월 버스와 영화관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엘리베이터, 놀이시설, 법정, 의료기관, 대학 등을 금연구역장소로 지정하였다. 특히 냉방중인 실내시설에 대하여는 사적인 공간에 대하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표 3 참조).

이후 가장 최근에 강화된 간접흡연예방조치에는 냉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을 뿐만아니라, 흡연이 금지된 건물과 시설의 출입구 및 비상구의 5m 이내의 거리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그림 1 참조).

표 2.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정부에 소속된 지자체의 간접흡연규제현황

지방자치구	실외흡연시 실내와의 거리규제	
	해당장소	실내와의 거리
Abbotsford	공공건물(시 소유의 건물 또는 시설)의 출입구, 개폐창문, 공기 흡입구, 공공장소(시 소유의 야외놀이터, 스포츠 venue, 스타디움, 스포츠 시설)	7m
Anmore Village	공공회장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실외 patio	7.5m
Belcarra	공공회장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놀이터, 아이들이 모여 노는 공공장소, 사람들 가깝게 앉거나 서있는 장소	7.5m
Kelowna	켈로나 국제 공항 터미널 중심빌딩 출입구 또는 비상구	10m
Mission	지자체 건물 출입구	15m
City of North Vancouver	버스정류장 반경	7.5m
District of North Vancouver	건물, 정류장, 고객센터 구역, 건물 출입구, 창문, 놀이터, 수영해변가, 음식 구매점, 소풍 지역, 스케이트보드 공원, 공공 이벤트 또는 행사 장소 등	6m
Pitt Meadows	실외 뜰(patio), 단 바에 딸린 patio 제외 공공장소, 작업장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7.5m
Port Moody	실외 뜰(patio), 단 바에 딸린 patio 제외 학교버스, 승객 버스, 페리, 고속운송 등 금연,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고객센터 구역, 발코니, patio, yard	7.5m
Powell River	대중교통정류소, 건물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고객센터 구역, 놀이터, 운동장, 학교운동장	6m
Richmond	전체 또는 부분적 밀폐된 대중교통 정류소	3m
	건물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고객센터 구역(음식, 주류 제공하는 곳과 연결된 부분적 또는 전혀 밀폐되지 않은 발코니, patio, 뒤뜰, 샷길 등)	6m
	25m-야외 스포츠 시설(스포츠 경기장, 스타디움, 골프 코스, 테니스 코트, 야외 수영장 등)	25m
Squamish	공공 장소, 작업장, 공용 구역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식당, 주류점, 공공 장소에 연결된 patio, 갑판, 대중교통 정류소, 공공 지역 공터(공원, 놀이 경기장, 테니스 코트, 운동장, 론볼링장, 길, 오솔길, 해변, 독, 요트정박지 등)	3m
Surrey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부분적 또는 전혀 밀폐되지 않은 고객센터 구역(patio 포함)	7.5m
Vancouver	고객서비스 구역(지붕으로 덮여 있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모든 patio)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전체 또는 부분적 밀폐된 대중교통 정류소	6m
West Vancouver	고객서비스 구역(음식, 주류 제공하는 곳과 연결된 부분적 또는 전혀 밀폐되지 않은 발코니, patio, 뒤뜰, 샷길 등), 고객센터 구역, 전체 또는 부분적 밀폐된 대중교통 정류소, 건물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수영 해변, 수영장, 시 소유 공원, 운동장, 시 또는 공공건물의 데이케어, 레크레이션 지역사회 센터, 시 레크레이션 시설(스케이트 보드 공원 등)	6m

〈표 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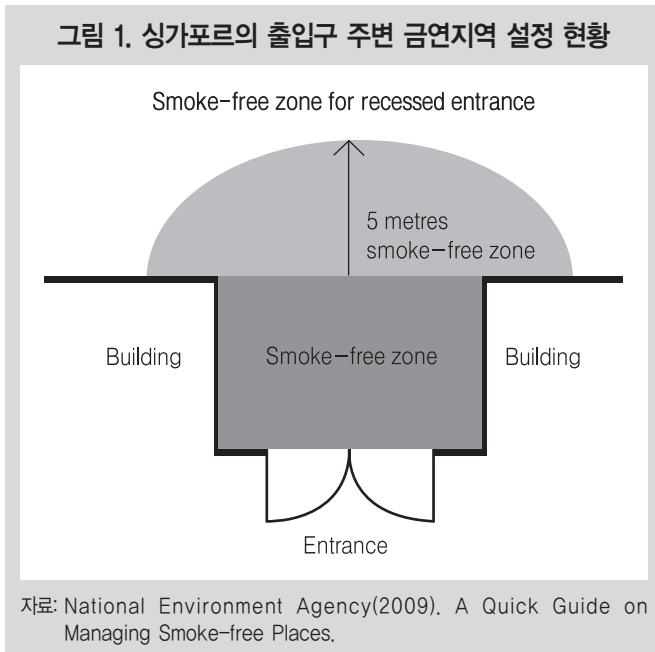
지방자치구	실외흡연시 실내와의 거리규제	
	해당장소	실내와의 거리
Whistler	외부 장소(신앙집회, 여흥, 레크레이션, 상업, 오락 등 위한), 운동장, 운동 경기장, 대중교통 정류소, 학교 시설, 건물, 시설, 장소, 구역의 출입구, 창문, 공기 흡입구	25m
White Rock	고객서비스 구역(음식, 주류 제공하는 곳과 연결된 부분적 또는 전혀 밀폐되지 않은 발코니, patio, 뒤뜰, 셋길 등), 외부 집회 장소(공원, 스포츠 경기장, 운동장, 산책로, 부두, 해변)	7.5m

자료: Non-smoker's Right Association(2011.3). Compendium of smoke-free Workplace and Public Place Bylaws.

표 3. 싱가포르의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변화 내용

해당연도	흡연금지 장소
1970. 10	버스, 영화관
1973. 3	엘리베이터
1982. 10	놀이공원
1988. 7	병원,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패스트푸드점의 실내 실내스케이트장,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실내롤러디스코텍
1989. 9	일부 냉방중인 백화점, 수퍼마켓 냉방중인 음식점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공공미술관 대형회의장, 대형전시장 실내체육시설(볼링장, 당구장, 스포츠센터, 체조시설 포함)
1992. 4	버스, 학교버스, 택시 냉방중인 미용실, 이용실, 은행
1992. 12	대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정
1994. 9	냉방중인 사무실, 냉방중인 실내작업장, 사적인 주거지역의 냉방중인 공동공간
1995. 3	Changi 국제공항건물
1995. 12	냉방중인 쇼핑센터, 지하인도, 공공장소에서 줄 서있는 경우
1997. 8	개인클럽의 일부 냉방중인 장소, 학교, 전문대학교, 종합대학의 냉방중인 장소 냉방중인 가게
2005. 10	공공화장실, 수영장, 커뮤니티센터/클럽, 경기장 버스환승장소, 버스정류장
2006. 7	냉방중이 아닌 음식점 Hawker 센터
2007. 7	고급술집
2009. 1	모든 실내 공공장소(냉방여부에 관계없음) 엘리베이터 로비 흡연이 금지된 건물과 시설의 출입구 및 비상구의 실외 5m이내 놀이터 및 운동 구역

자료: National Environment Agency(2009). A Quick Guide on Managing Smoke-free Places.



1995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 주정부별 간접흡연규제를 보면 간접흡연규제를 실시하는 주의 수가 증가됨을 보인다. 이러한 주 정부 차원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1995년과 비교하여 규제 대상과 규제 방법에 있어서 크게 강화되었다. 1995년 주 정부 차원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주로 정부 건물, 병원, 대중 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2005년에는 쇼핑몰, 식당, 술집, 감옥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미국 주의 과반수가 대중교통시설, 정부기관, 호텔, 식당, 술집

4. 미국의 간접흡연규제 동향

미국에서는 1971년 Surgeon General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연방정부가 금지할 것을 제안한 이래 미국 정부, 주정부와 민간 사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간접흡연 규제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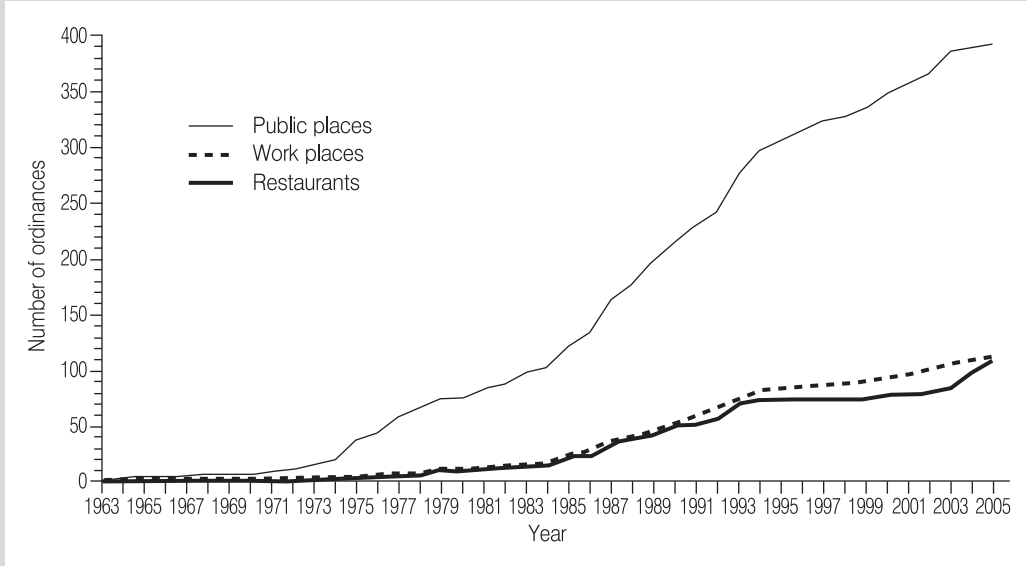
미국 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를 각 주에서 제정한 법제·개정수에 비추어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규제는 197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증가 속도를 보였다. 작업장과 식당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증가속도는 매우 완만하다(그림 2 참조).

등의 실내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내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주는 대중교통시설인 경우 1995년 15개주에서 2011년 40개주로 증가하였고, 민간작업장에 대한 간접흡연규제는 1995년 실시하는 주가 없었으나, 2011년 33개주로 증가하였고, 1995년 간접흡연규제정책을 실시하는 주가 없었던 술집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주도 2011년 27개주로 증가하였다.

1995년 최초로 실내작업장에서의 완전금연을 실시한 캘리포니아주는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해변, 출입구, 놀이터, 대학캠퍼스, 식당실외지역, 공공주택, 카지노에서의 완전금연을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 공공건물의 중앙 출입구, 비상구, 창문으로부터 20피트(약

그림 2. 미국 간접흡연 관련 주 법의 제정과 개정 누적수(1963~2005년)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6). The Health Consequences of Involuntary Exposure to Tobacco Smok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표 4. 미국 간접흡연규제 실시 주정부 수 변화(2011년/2005년/1995년)

(단위: 주정부수, 2011년1사분기/2005년 4사분기/1995년 4사분기)

구분	간접흡연 규제 있음				간접흡연규제 없음
	완전금연(a)	환기시설 구역에서만 흡연(b)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c)	계(a+b+c)	
대중교통시설	40/22/15	2/3/1	5/16/22	47/41/38	4/10/13
상업 보육시설	39/29/19*	0/2/1	4/6/7	43/37/27	8/14/24
가정 보육시설	37/24/12*	0/2/1	4/3/5	41/29/18	10/22/33
정부 기관	36/17/8	4/5/2	8/23/31	48/45/41	3/6/10
호텔 및 모텔	36/17/3	0/0/0	4/11/16	40/28/19	11/23/32
슈퍼마켓	33/13/6	2/3/1	8/19/23	43/35/30	8/16/21
병원	33/14/5	3/4/2	10/26/35	46/44/42	5/7/9
민간 작업장	33/9/0	2/3/1	6/18/20	41/30/21	10/21/30
식당	32/10/1	5/2/0	6/22/29	43/34/30	8/17/21
실내 체육시설	32/11/2	2/3/1	8/14/18	42/28/21	9/23/30
쇼핑몰	30/8/1	3/4/1	3/7/7	36/19/9	15/32/42
술집	27/6/0	3/2/0	2/4/2	32/12/2	19/39/49
감옥	9/4/0	1/2/0	5/3/3	15/9/3	36/42/48

주: * 상업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 부지 내 아이들이 있을 시 흡연금지한 주정부 수 포함: 상업 보육시설(11/11/9), 가정 보육시설 (26/20/10)

자료: CDC(2011). State Tobacco Activities Tracking and Evaluation(STATE) System.

6m)거리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 공공건물실외에서의 흡연에도 제한을 두었다.²⁾

2008년 기준 Solana Beach, Manhattan Beach, New Port Beach, San Francisco, Santa Cruz, Santa Monica 등 26개의 금연비치, 103개의 공원, 18세 이하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바닷가, 산책로, 야외 카페, 버스 정류장, 축구 경기장, 실외 수영장, 공원, 주차장, 인도 등에서도 금연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연구역 확대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흡연 가능한 지역은 개인 주거지 등 지극히 사적인 공간뿐이다.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흡연을 규제하는 금연시설의 확대, 실내에서의 흡연제한에서 실내완전금연, 실내와 밀접한 실외지역에서의 흡연금지의 단계를 거쳐 간접흡연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다른주도 점차적으로 실외흡연도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시사점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3개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점차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흡연을 규제하는 공공장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흡연의 규제도 실내에서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허용, 실내에서의 흡연 완전금지, 금연시설과 밀접한 실외에서의 흡연금지로 강화되어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정책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실내에서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담배연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실외에서의 흡연도 실내로 유입된다는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실내완전금연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금연시설에 대하여는 실내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흡연도 제한하는 등 정책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

2) California State Government code Section 7596-7598

3)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alifornia Tobacco Control Program, 2009. California Tobacco Control Update 2009: 20 Years of Tobacco Control in California: Sacramento, CA.